

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공간 운영 및 사용 규칙

2026년 3월 11일 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(이하 지역위)가 운영하는 공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- ① 사용 가능한 공간은 강당이다. 카페만 따로 사용할 수 없고, 중복되는 행사나 회의가 있을 시에는 강당을 사용해도 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.
- ② 사용이란 교육/행사/회의 등을 진행하기 위해 강당의 사용 승인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휴관 및 운영시간)

- ① 매주 토, 일, 법정 공휴일과 5월 23일(대통령 서거일)은 외부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. 단, 공간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협의 후에 허가할 수 있다.
- ② 운영시간은 10~21시로 한다.

제4조(절차)

사용의 절차는 유선상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한다.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받고, 사용료를 납부하면 사용의 신청이 완료된다.

제5조(사용의 거절)

사용 신청 시 지역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승인 및 거절을 할 수 있다. 거절의 사유는 아래와 같다.

1. 재단의 가치, 목적 등에 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
2. 법규를 위반하거나,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경우
3. 특정 종교의 포교를 위한 경우
4.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경우
5. 사용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

제6조(사용료)

- ① 사용료는 교육/행사/회의 등 1회 기준으로 기본 100,000원(십만원)으로 한다.
- ② 사용료는 신청자, 사용 목적, 사유 등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, 감면 사유는 아래와 같다.
 1. 재단 및 지역위가 후원하는 경우
 2. 재단 및 지역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- ③ 감면 사유가 있더라도 프로그램 특성상 상당한 관리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제7조(변경, 취소)

- ① 지역위는 신청인의 신청정보 및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② 일정이 변경된 때에는 사용 3일 전에는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지역위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용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계약 취소 및 반환)

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지역위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면 전액 반환한다.

제9조(관리의무 및 손해배상)

- ① 사용자는 사용 직후부터 종료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다.
- ②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 이 규칙은 임원·운영위원 연석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제2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민법에 따른다.